

英國農業革命에 관한 研究

金 宗 炫*

<目 次>	
I. 序 言	2. 農業技術의 變革
II. 18世紀初의 英國農業	3. 土地制度의 變革
III. 農業革命의 展開	IV. 結 語
1. 農業變化의 方向	

I. 序 言

農業革命은 技術的 및 制度的 變革을 통한 農業生産性的 增大와 農業諸關係의 近代的 變革過程이다. 農業依存度가 높은 前工業社會에 있어서 農業은 그 社會의 生産力의 基礎가 될 뿐만 아니라 前近代的 社會關係의 基盤인만큼 그의 近代的 變革過程으로서의 農業革命은 近代工業社會의 形成에 있어서 하나의 歷史的 前提가 되는 것이다.

로스토크(W.W. Rostow)는 「農業生産 및 生産性的 增大는 經濟發展에 複合的 役割을 한다」⁽¹⁾고 指摘하면서 工業化에 있어서 農業革命이 하는 役割을 強調하고 있다. 그는 農業革命의 結果로서의 農業生産性的 增大가 첫째로 食糧供給을 增加시킴으로써 그의 輸出을 可能케 하여 工業化에 必要한 外貨를 獲得할 수 있거나 또는 食糧의 輸入依存度を 低下시켜 外貨를 節約할 수 있게 하고 둘째로 農家所得을 增大시킴으로써 國內市場의 擴大를 可能케 하고 工業生産에 刺戟을 줄 뿐만 아니라 農業部門에서의 租稅收入을 增大시켜 그의 産業資本에의 轉化를 可能케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²⁾ 한편 포스탄(M.M. Postan)도 工業化의 先行條件으로서의 農業革命의 意義로서 (1) 食糧供給의 增加 (2) 國內市場의 擴大 및 (3) 勞動力供給의 增大를 들고 있다.⁽³⁾ 로스토크와 포스탄은 工業化와의 關聯에서 農業生産性的 增大의 意義 따라서 農業技術의 變革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는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教授

(1) W.W. Rostow (ed.), *The Economics of Take-off into Sustained Growth*,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by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London, 1963, p. 13.

(2)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1965, pp. 21-24, Rostow(ed.), *The Economics of Take-off into Sustained Growth*, pp. 13-14.

(3) M.M. Postan, "Agricultural Problem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Light of European Agrarian History," *Contribution and Communication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conomic History, Aix-en-Provence, 1962 參照.

것이지마는 그것이 그에 對應한 制度的 또는 構造的 變化를 隨伴한다는 것을 看過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技術的 變革이 이루어지고 合理的 農業經營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에 對應해서 制度的 變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技術的 變革과 制度的 變革은 農業革命의 두가지 側面인 것이다.

農業革命의 時期와 性格은 歷史的 傳統 社會的 및 政治的 條件 그리고 經濟發展의 水準에 따라서 國家間에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例를 들어 後述하는 바와 같이 英國은 매우 유니한 農業革命을 遂行했으며 佛蘭西의 경우에는 18世紀 末葉의 大革命에 의해서 農民解放이 이루어지고 封建的인 農業關係가 一掃되었으나 農民의 土地所有와 小農經濟가 特徵的인 農業構造가 確立되었고 한편 나폴레옹에 의해서 佛蘭西의 改革이 斷行된 西南독일에서도 類似한 農業構造가 確立되었다. 이에 對해서 農場領主制(Gutsherrschaft)가 支配的이었던 東部독일에서는 19世紀 初에 「위로부터」 農奴解放이 이루어졌으나 容커(Junker)가 支配하는 大農場經營이 展開되었다. 러시아의 農奴解放은 1860年代에 들어서 비로소 遂行되었다. 이렇듯 農業革命은 國家에 따라서 時期와 性格이 다르고 또한 그것이 그 나라의 近代의 發展에서 한 役割도 다르지마는 그것이 近代의 工業社會를 形成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歷史的 前提가 되었다는 意味에서 그것은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本稿는 英國農業革命의 構造를 分析하고 그의 歷史的 意義를 考察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英國의 農業革命은 從來 인클로우저運動과 同義로 認識되어 왔다. 따라서 16世紀의 인클로우저運動을 「第1次」 農業革命 그리고 18世紀後半에서 19世紀初에 걸쳐서 遂行된 인클로우저를 「第2次」 農業革命으로 불리워졌다.⁽⁴⁾ 그 경우 16世紀의 인클로우저運動은 農業生産性的 增大보다 土地制度의 變化的 契機가 되었다는 意味에서 農地革命(the Agrarian Revolution), 그리고 18世紀 後半에서 19世紀初에 걸쳐서 遂行된 인클로우저는 土地制度 및 農村構造의 急激한 變化만이 아니라 改良農法을 中心으로 하는 農業技術의 進歩를 促進하고 農業生産성을 크게 增大시켰다는 意味에서 農業革命(the Agricultural Revolution) 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따라서 從來의 農業革命에 관한 研究는 이 두 時期의 인클로우저運動에 集中되어 있었다. 특히 農地革命과는 달리 技術的 및 制度的 變革을 통한 農業生産性的 增大와 農業諸關係의 近代의 變革過程으로서의 農業革命에 관한 研究는 18世紀 後半에서 19世紀初 즉 인클로우저가 大規模로 遂行된 時期에 集中되었으며 18世紀 前半에 관해서는 그다지 注目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時期의 史料의 性格과 아울러 18世紀

(4) Sir William Ashley, *An Introduction to English Economic History and Theory*, Vol. 1, Part II, The End of the Middle Ages, Fourth Edition, London, 1906, p. 286.

後半에서 19世紀 初에 이르는 時期에 大規模의 인클로우저와 함께 土地制度 및 農村構造에 큰 變化가 있어나고 또한 그것이 進步의 地主에 의한 改良農法의 普及을 쉽게하고 農業技術의 進步를 促進시켰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世紀末에서 18世紀 前半期에 걸친 土地所有에 관한 하바쿠크教授의 先驅의 研究⁽⁵⁾以來 英國農業의 變化에 있어서 18世紀 前半期가 가지는 意義가 漸次的으로 重要視되게 되고 그후의 研究에 의해서 그와 같은 傾向은 더욱 커지고 있다⁽⁶⁾. 그 結果 이 時期에는 비록 크게 눈에 띄이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土地所有者間의 合意에 의한 인클로우저가 進展되고⁽⁷⁾ 大土地所有制 및 地主—借地農制度의 成長과 小農의 衰退라고 하는 土地 및 農村構造의 變化만이 아니라 改良農法의 導入등 農業變化가 크게 進展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英國의 農業革命은 18世紀 後半期~19世紀初에 걸친 인클로우저의 時期만이 아니라 18世紀 前半期를 包含해서 認識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18世紀初에서 19世紀初에 이르는 農業變化의 過程을 綜合的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II. 18世紀初의 英國農業

18世紀初의 英國經濟에서 農業은 壓倒的인 地位를 차지하고 있었다. 필리스 딘 (Phyllis Deane) 및 콜(W. A. Cole)의 統計에 의하면 1700年の 英國의 國民總生産(實質)의 構成比는 工業 및 商業이 30%인데 對해서 農業은 43%였다.⁽⁸⁾ 當대의 有名한 統計學者 킹 (Gregory King)에 의하면 地主의 地代收入과 農業者의 農業利潤은 國民所得의 約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以外에 農業勞働者라든가 農村手工業者등 農業과의 關係에서 生計를 維持하고 있는 者를 包含하면 農業은 人口의 4分の 3程度를 扶養하고 있었던 것이다.⁽⁹⁾

이렇듯 傳統的으로 農業이 차지하는 壓倒的 地位가 18世紀初의 英國에서도 繼續 維持되고 있었지만 農業制度 自體는 傳統的인 段階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었다. 事實 英國

(5) H.J. Habakkuk, "English Landownership, 1680—1740," *Economic History Review*, 1st Series, Vol. X, 1940.

(6) G.E. Mingay, "The 'Agricultural Revolution' in English History: A Reconsideration," *Agricultural History*, Vol. 37, No. 3, 1963.

(7) 베레스포드는 인클로우저의 時期를 社會輿論에 反하고 또한 法律을 違反하면서 強行한 第1期(1450—1600年) 關係者間의 同意에 의해서 이루어진 第2期(1600—1740年) 그리고 議會의 法律에 의해서 遂行된 第3期(1740—1840年)로 區分하고 있다. Maurice Beresford, "Glebe Tiers and Open Field Leicestershire," *Studies in Leicestershire Agrarian History*, ed. by W.G. Hoskins, Leicester, 1949, pp. 79—80.

(8) Phyllis Deane and W.A. Cole, *British Economic Growth 1688—1959, Trends and Structure*, Cambridge, 1962, p. 78.

(9) J.D. Chambers and G.E. Mingay, *The Agricultural Revolution 1750—1880*, London, 1966, p. 15.

의 農業組織은 大陸諸國의 그것에 비해서 일찍부터 變化되고 있었다. 莊園制의 崩壞와 함께 農民은 隸農의 地位에서 慣習小作農(customary tenants)으로 轉化되고 15世紀末, 16世紀初에는 農民分化和 함께 獨立自營農民으로서의 요맨(yeoman)層이 廣範하게 形成되고 있었다. (10) 특히 16世紀의 價格革命에의 對應形態로서 나타난 地主에 의한 土地의 統合 및 인클로우저는 비록 그 範圍가 限定된 것이었다(11)고 할지라도 農民의 土地로부터의 追放과 함께 農民分화를 促進시키고 土地所有權의 變化를 結果했다. 인클로우저는 17世紀에도 繼續되었다. 그러나 17世紀의 인클로우저는 耕地의 牧場에의 轉換을 위해서 不法의 暴力的으로 遂行된 16世紀의 인클로우저와는 달리 耕地의 利用度를 높이기 위해서 合意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인클로우저의 結果로서 18世紀初에는 英格蘭의 耕地의 約 50%가 圍牆되어 共同權을 排除하여 個別的으로 利用되고 있었다. (12)

한편 開放耕地제도 典型的 形態로부터 變質되고 있었다. 그레이(H. L. Gray)의 研究(13)에 의하면 英格蘭의 耕地制는 地域에 따라서 多様하게 展開되었으며 二圃 및 三圃農法이 典型的으로 展開된 미드랜드(Midland)에 對해서 이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켄트(Kent) 및 템즈江下流地域에서는 典型的인 耕地制의 內容이 明確치 않을 뿐만 아니라 13世紀의 早期의 인클로우저에 의해서 일찍부터 複雜한 樣相을 띠고 있었다. 게이가 「미드랜드制」(midland system)라고 부른 典型的인 開放耕地制가 一般的이었던 미드랜드를 除外한 餘他地域에서는 18世紀初에는 이미 상당한 程度까지 開放耕地制는 止揚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드랜드에서도 傳統的인 開放耕地制下에서의 三圃農法은 新穀草式農法(convertible husbandry)이 導入됨으로써 變質되고 있었다. 즉 이 地域에서는 16世紀後半에 開放耕地制下에서도 農民이 保有地의 一部를 一時的 草地(ley)로서 個別的으로 利用하고 있으며 小麥 또는 라이麥 大麥 오트麥 豆類을 連續적으로 栽培한 然後에 耕地를 數年동안 또는 7~8年間 牧草地化함으로써 傳統的인 休閒制를 變質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新穀草式農法은 家畜飼育을 擴大시키고 土地의 地力을 보다 높이는 方法이었다. 1607년에 레스터

(10) 拙稿「英國 요맨에 관한 一研究」其一, 其二, 『經濟論集』(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刊)第4卷 第1號, 1965年 3月 및 第4卷 第3號, 1965年 9月 參照.

(11) 게이는 24個州의 인클로우저에 관한 報告書를 分析하여 1455—1607年의 인클로우저의 範圍는 가장 많은 影響을 받은 미드랜드地方에서 全面積의 6.03%였으며 英格蘭 全體로서는 全面積의 2.76%였다고 主張했으며 그것은 그후 인클로우저의 範圍에 관한 通說의 基礎가 되었다. E.F. Gay, "Inclosure in England in the Sixteenth Centu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XVII, No. 4, 1903 參照.

(12) Lord Ernle, *English Farming Past and Present*, New (Sixth) Edition with Introductions by G.E. Fussell and O.R. McGregor, London, 1961, p. 154; T.S. Ashton,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The 18th Century*, London, 1955, p. 33.

(13) Howard Levi Gray, *English Field Systems*, Harvard University Press, 1915, reprinted, London, 1959.

셔(Leicestershire)의 러터워드(Lutterworth)의 7個農場에서의 土地利用狀況을 보면 農場總面積 296 버게이트(virgate)에서 圍牆地가 4%, 耕地가 68%, ley地가 13%, 牧草地(meadow)가 15%였다. 러터워드에서는 全耕地의 約 3分の 1이 ley 및 牧草地로서 어떤 形態든간에 牧場으로 利用되고 있으며 나머지 3分の 2가 耕作되고 있다.⁽¹⁴⁾ 同州의 위그스톤 마그나(Wigston Magna)教區에서는 16世紀末에 ley地는 農場에 따라서 農場面積의 17%~26%에 達하고 있었다.⁽¹⁵⁾ 호스킨스(W.G. Hoskins)는 적어도 開放耕地의 20%는 新穀草式農法下에 있었다고 指摘하고 있다.⁽¹⁶⁾ 반 배드(B.H. Slicher van Bath)는 新穀草式農法이 三圃農法에서 「노포크農法」(Norfolk system)에 이르는 中間段階에 位置하는 것으로서 重要視하고 그것은 英國에서만이 아니라 大陸의 여러 地域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¹⁷⁾

開放耕地制가 普通 생각되는 것만큼 硬直的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程度 伸縮的이었다는 것은 잘 指摘되고 있다. 애슈톤(T.S. Ashton)은 開放耕地制下에서도 相互合意에 의한 地條의 交換 및 保有地의 擴大가 可能했고 慣習的인 輪作以外的 다른 作物의 追加의 栽培가 可能했고 牧草地를 個別的으로 利用하기 위한 協定이 可能했다고 指摘하고 있으며⁽¹⁸⁾ 호스킨스는 開放耕地制下에도 土壤에 따라서 作物을 栽培할 수 있고 牧場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指摘하면서 이와 같은 可能性이 個個의 農民으로 하여금 農業經營에서의 상당한 이니셔티브와 自由를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¹⁹⁾ 17世紀初에 二圃農法이 一般的이던 비크셔(Berkshire)의 하웰(Harwell)에서 더욱 改良된 農業經營을 한 로더(Robert Loder)의 例는 開放耕地制下에도 比較的 伸縮性있는 個別的인 土地利用이 可能했다는 것을 例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²⁰⁾

叙上한 바와 같이 開放耕地制가 그 自體로서 伸縮性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드랜드 以外の 諸地域에서의 早期의 인클로우저 그리고 미드랜드 自體에서의 新穀草式農

(14) W.G. Hoskins, *Essays in Leicestershire History*, Liverpool, 1950, pp. 140-141.

(15) W.G. Hoskins, *The Midland Peasant,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a Leicestershire Village*, London, 1957, p.152.

(16) *Ibid.*, p. 164.

(17) B.H. Slicher van Bath, *The Agrarian History of Western Europe A.D. 500-1850*, London, 1963, pp. 248-9.

(18) Ashton,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The 18th Century*, p. 33.

(19) Hoskins, *The Midland Peasant*, p. 164.

(20) 로더의 農業經營에 관해서는 G.E. Fussel (ed.), *Robert Loder's Farm Accounts, 1610-1620*, London, 1936 및 小松芳喬著 『イギリス 農業革命の研究』東京 1936年 所收 第7論文 參照. 또한 開放耕地制下에서의 農業經營의 改善可能性에 관해서는 拙稿, 「16~7世紀ウイルトンヤにおける農業の發展形態——特に農業地區の對比において——」 經濟學研究年報 第2號 (早稻田大學 大學院) 1961年 參照.

法の展開에 의한 開放耕地制의 變質은 그만큼 農村의 共同體의 性格도 變化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圃牆된 土地가 個別的으로 利用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開放耕地에서 個別的으로 利用될 수 있는 土地의 增大는 그만큼 共同耕地를 減少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村落共同體 運營의 하나의 基盤으로서의 共同作業 및 耕作強制(Flurzwang)가 解弛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한편 村落共同體의 解弛는 土地所有者의 構成으로 본 農村構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킹에 의하면 17世紀末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農業者數는 33萬名이었다. 그 中에서 15萬名은 大地主와 젠트리의 土地를 經營하는 借地農이었으며 나머지 18萬名은 自身の 土地와 때로는 地主로부터의 借地를 追加적으로 耕作하는 自作農이었다. 自作農의 大部分은 20에이커 程度의 小規模의 土地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自作農의 밑에는 貧農(cottager)과 農業勞動者가 있었으며 農業勞動者와 土地所有者와의 比率는 7對4 程度였다.⁽²¹⁾ 農業勞動者와 土地所有者와의 比率로 볼 때 17世紀末 乃至 18世紀初의 英國에서 多數의 勞動者를 雇傭해서 經營되는 大農場이 一般의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事實 大部分의 自作農은 家族勞動에 依存하면서 農繁期에 臨時的으로 勞動者를 雇傭했으며 보다 큰 農場에서도 雇傭된 勞動者는 少數였다. 그러나 叙上한 農村構造로 보아 18世紀初에는 農民分化가 상당히 進展되고 있었다는 것은 明白하다. 平等한 農民의 生活體로서의 農村共同體는 그만큼 解體되고 있었던 것이다.

農業制度 및 農村構造의 變化와 함께 農業生産의 地域의 特化도 進展되고 있었다. 自給自足的 段階에서와는 달리 商業的 農業이 進展되는 속에서 農業生産이 土壤 및 氣候 등 自然條件과 市場條件에 適合한 方向에서 特化되어 나간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英國의 경우 商業的 農業은 일찍부터 展開되고 있었다. 16世紀의 잉글로우저는 바로 土地로부터의 收益을 보다 增大시키려고 한 地主의 對應形態였다. 물론 18世紀 以前의 英國農業經營의 商業的 性格을 過度하게 評價해서는 안된다. 大多數의 小農民들이 市場生産보다도 自給自足的 生産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商工業이 發達하고 都市가 成長하는 속에서 農業이 自給自足的 生産에 停滯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農産物의 全國的 市場이 成立되고 高度의 商業的 農業이 展開되는 것은 18世紀에 들어서 특히 有料道路 및 運河 등 새로운 交通手段이 改良되면서 부터이지만 그 以前에도 英國農業의 商業的 性格은 크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農業生産에서 穀物이 차지하는 比重은 가장 큰 것이었다. 따라서 穀物生産은 全國的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당한 程度까지 地域的인 專門化가 展開되고 있었다. 특히 이이스트앙글

(21) Chambers and Mingay, The Agricultural Revolution, p. 18.

리아(East Anglia), 에섹스(Essex), 켄트(Kent)에서 도셋(Dorset)에 이르는 南部 및 미드랜드粘上地帶의 大部分은 小麥生産에 크게 集中하고 있었으며 大麥은 케임브리저셔(Cambridgeshire), 허트포드셔(Hertfordshire), 버어크셔(Berkshire) 및 윌트셔(Wiltshire)와 요오크셔(Yorkshire)의 一部에서 廣範하게 栽培되었고 燕麥은 노덤버랜드(Northumberland), 더람(Durham), 랭카셔(Lancashire), 체셔(Cheshire), 다아비셔(Derbyshire), 노팅검셔(Nottinghamshire) 및 링컨셔(Lincolnshire)에서 廣範하게 栽培되었다. 이들 穀物은 地域間 交易에 의해서 供給되었다. 런던은 이이스트 앵글리아와 템즈(Thames) 및 리(Lea) 江 流域으로부터, 브리스톨(Bristol)은 세번(Severn) 및 와이(Wye) 江 流域으로부터, 그리고 요오크셔의 工業地帶는 이이스트라이딩(East Riding) 및 링컨셔로부터 各各 供給을 받았다.⁽²²⁾

專業化는 家畜生産에서도 進展되고 있었다. 미드랜드, 이이스트앵글리아 및 런던近郊에는 런던市場을 위해서 스코트랜드(Scotland) 및 웨일즈(Wales) 産 幼牛를 飼育하는 大地區가 있었으며 또한 레스터셔와 링컨셔에는 土地의 牧畜業者에 의한 牛의 繁殖과 飼育이 廣汎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羊은 웨일즈와 컴버랜드의 山地, 페닌山脈, 코스월드(Cotswolds), 데본셔(Devonshire) 荒野, 서섹스(Sussex)에서 도셋에 이르는 高原, 롬니마쉬(Romney Marsh) 및 펜(Fen) 地方 等地에서 廣汎히 飼育되었지만은 특히 워릭셔(Warwickshire)와 링컨셔의 中間地帶 및 그레이트 오우스(Great Ouse) 江과 트렌트(Trent) 江의 中間地域에서 크게 飼育되었다. 酪農은 체셔와 윌트셔 및 글로스터셔(Glostershire)에서 廣汎하게 營爲되었다.⁽²³⁾

18世紀初에 있어서 農業生産은 크게 市場을 目的으로해서 展開되고 있었다. 各種穀物과 家畜生産物은 地方的 市場에서 活潑하게 去來되었으며 그러한 地方的 市場은 런던市場과 連結되고 있었다. 有料道路라든가 運河 등 輸送手段이 未改良狀態에 있었던 18世紀前半期에 있어서 農産物의 地方的 獨占과 農産物價格의 地方的 差異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로저스(Thorold Rogers)가 17世紀 末葉의 英國에는 (1) 템즈江流域地帶 (2) 東部諸州 (3) 미드랜드地方 (4) 南部地方 (5) 南西部地方 (6) 北部地方 등 6個의 穀物價格 地域이 있었다고 指摘한데 대해서, 존(A.H. John)은 이와 같은 穀物 市場의 地域的 境界는 固定된 것이 아니었고 특히 沿岸交易으로 容易하게 接近할 수 있었던 地域은 런던市場의 影響을 받았으며 1730年 以後에는 地方新聞의 發達이 런던市況을 傳達

(22) Ashton,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The 18th Century*, p. 31.

(23) *Ibid.*, p. 31; Chambers and Mingay, *op. cit.*, pp. 22-3.

함으로써 그러한 市場의 地域的 境界를 除去하는 役割을 했다고 指摘하고 있다.⁽²⁴⁾ 18世紀 初에는 農產物價格의 地方的 差異의 存在에도 不拘하고 그것은 런던市場에 의해서 상당한 影響을 받고 있었다. 특히 穀物以外的 家畜이라든가 酪農品價格은 全國的으로 런던市場의 價格과 密接하게 連結되고 있었다. 챔버즈와 밉게이가 指摘하는 바와 같이⁽²⁵⁾ 런던은 農業特化 및 商業루우트의 큰 決定要因이었으며 상당한 程度까지 一般物價水準의 決定要因이었다. 18世紀初의 英國農業은 自給自足的 基盤에서 停滯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營利的 基盤에서 營爲되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보다 合理的인 農業經營이 指向되고 있었다.

III. 農業革命의 展開

1. 農業變化의 方向

챔버즈는 「어느 時期的 農業變化의 決定要因은 價格水準이다」⁽²⁶⁾ 라고 指摘하고 있다. 營利的 農業에 있어서는 農產物價格의 움직임이 長期的으로는 農業經營 및 農業制度의 變化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前近代의 農業經營과 農業制度를 克服하지 못한 채 營利的 農業을 追求한 18世紀의 英國에 있어서 農產物價格의 長期的 趨勢는 이 時期的 農業變化의 基本的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18世紀의 農產物價格의 長期的 움직임은 그 前半期和 後半期에 따라서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全期間을 통해서 食肉, 酪農製品 및 其他 家畜生産物 價格은 比較的 安定的이었으나 穀物 특히 小麥價格은 短期的으로는 큰 變動幅을 가지면서도 一般的으로 18世紀 前半期에는 下落傾向을 나타내며 對해서 後半期에는 上昇傾向을 나타냈다. 例를 들어 小麥價格은 地方的인 差異는 있었으나 英格蘭드 南部에서는 1717—24年, 1730年代 및 1740年代에 1660年代의 平均價格보다도 25~33%나 下落했다. 특히 30年代 및 40年代의 穀物價格의 下落은 「農業不況」이라고까지 말해지고 있다.⁽²⁷⁾ 이와 같은 18世紀 前半期の 穀物價格의 下落과는 달리 後半期에는 1779—80年과 1788—9年을 除外하고 全期間을 통해서 穀價는 꾸준히 上昇했으며 특히 英佛戰爭期間(1793—1815年)에는 急激하게 上昇했다. 즉

(24) A.H. John, "The Course of Agricultural Change 1660-1760," in *Studies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d. by L.S. Pressnell, London, 1960 參照.

(25) Chambers and Mingay, *op. cit.*, p. 33.

(26) J.D. Chambers, "The Vale of Trent 1670-1800. A Regional Study of Economic Change," *Economic History Review*, Supplements, 3, p. 39.

(27) G.E. Mingay, "The Agricultural Depression, 1730-1750,"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VIII, No. 3, 1956. 이 論文은 E.M.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Vol. II, London, 1962에 收錄되고 있다.

小麥價格은 1750—90년에 50—75% 上昇했으며 1790年代初에 1쿼터當 48s.—58s. 水準에 있던 小麥價는 1795—6년에는 平均 76s.이 되고 1800年, 1801年, 1810—3년에는 各各 100s.을 上廻하게 되었다. 23個年の 戰爭期間에 小麥價格이 65s. 以下の 水準으로 떨어진 해는 6個年에 不過했다.⁽²⁸⁾ 18世紀 後半期와 英佛戰爭期間을 통해서 農業은 長期의 繁榮을 했던 것이다.

채임버즈와 밉게이는 1930年代 以前에 있어서 英國의 農產物價格은 需要와 供給에 依存하고 있었다고 指摘하고 있다.⁽²⁹⁾ 18世紀의 英國農業에 있어서 需要增大는 人口增加에 依存하고 있었다. 18世紀 英國의 人口의 움직임을 보면 前半期에 停滯의 이었다가 後半期에 크게 成長하고 있다. 즉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人口는 1700년에 580萬名이었던 것이 1750년에는 610萬名으로 50年 동안에 30萬名이 增加했음에 不過하다. 이것은 年平均 6,000名이 增加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에 對해서 人口는 1760—1800年の 50年間에는 660萬名에서 900萬으로 240萬名이 增加했다. 즉 每年平均 5萬名이나 增加한 것이다. 1810년에 그것은 1000萬名을 突破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人口의 움직임에 對應해서 國內의 穀物消費量은 1700년에 1300萬쿼터 였으며 1750年에도 1400萬쿼터 未滿의 水準에 머물고 있었는데 對해서 1760년에는 約 1500萬쿼터가 되고 1800년에는 2,000萬쿼터로 크게 增加하고 있으며 1810년에는 2300萬쿼터를 上廻하는 水準에 達하고 있다.⁽³⁰⁾

이러한 需要의 움직임에 對해서 供給은 어떠했는가.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穀物生産量은 1700년에는 1480萬쿼터, 1750년에는 1650萬쿼터, 그리고 1800년에는 2110萬쿼터로서 18世紀 동안에 約 43% 增加했다. 이와 같은 供給條件에서 18世紀 前半期에는 英國은 穀物의 輸出餘力を 가지고 있었으나 1770年代부터는 不足分을 輸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1800년에 英國의 穀物純輸入은 130萬쿼터가 되었다. 18世紀 後半期の 人口增加 따라서 需要增大는 國內穀物生産의 擴大에도 不拘하고 純輸入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8世紀를 통한 國內穀物生産의 增大는 耕地擴大와 生産性的 向上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콜 및 딘에 의하면 耕地面積은 18世紀初에 480萬에이커였던 것이 18世紀末에는 600萬에이커로 25% 增加했으며 에이커當 生産性은 10% 上昇했다. 18世紀를 통한 英國의 穀物生産量의 增大는 그 大部分이 18世期 後半期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1人當農業生産量은 18世紀에 25% 增加했으며 그것은 모두가 1750年 以前에 이루어진 것이었다.⁽³¹⁾

(28) Chambers and Mingay, *op. cit.*, pp. 110-3.

(29) *Ibid.*, p. 106.

(30) Deane and Cole, *British Economic Growth*, p. 65, Table 17 參照.

(31) *Ibid.*, pp. 66-8, p.75.

前者의 경우 인클로우저에 의한 耕地面積의 擴大가 重要한 役割을 했으며 後者의 경우 農業技術의 改良이 重要한 役割을 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需要와 供給의 關係에서 볼 때 18世紀 前半期의 穀物價格의 低下는 低人口增加率에 基因하는 需要의 低伸長과 長期間의 豐年의 連續 및 改良農法에 의한 生産性 上昇에 基因하는 穀物供給의 相對的 增大的 結果있으며 18世紀 後半期의 穀物價格의 騰貴는 人口의 큰 增加에 따르는 穀物需要의 相對的 增大的 結果였다. 이와 같은 農產物 특히 穀物價格의 움직임을 前提로 해서 18世紀의 農業變化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農業變化의 方向은 18世紀의 前半期와 後半期와의 사이에 큰 差異가 있었다.

18世紀 前半期의 「農業不況」은 어떠한 變化를 農業經營과 制度에 가져왔는가. 이 問題를 考察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時期의 農業不況이 全面的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指摘해 둔 必要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穀物以外的 農業生産物價格은 比較的 安定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牧畜業者 및 酪農業者들은 安定的인 基盤에서 生産을 擴大할 수가 있었다. 또한 農業의 地域的 特化가 進展되고 있기는 하면서도 穀物生産과 家畜飼育은 密接한 關係를 가지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穀物價格의 움직임만으로 農業者의 經濟的 條件을 判斷한다는 것은 一面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指摘되어야 할 것은 穀物價格의 低下는 穀物生産者들에게 不利하게 作用하고 그들에게 打撃을 주었다는 것은 事實이지마는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 影響은 一律的인 것이 아니라 土壤條件과 農業者의 對應形態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18世紀 前半期의 低穀價는 中小農에게 큰 打撃을 주어 특히 中·東部 잉글랜드의 重土壤地帶에서는 小農의 沒落을 結果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大農 및 地主에게도 不利했다. 예를 들어 地代의 滯納은 1702年—5年, 1709—12年, 그리고 1730年代 및 40年代에 重土壤地帶에서만이 아니라 輕土壤地帶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³²⁾ 이와 같은 背景에서 農業者는 土地利用方法을 變革하면서 價格에 대한 費用調整을 試圖했으며 그 過程에서 農業變化가 進展되었던 것이다.

價格에 대한 費用調整의 方法으로서의 土地利用의 變化는 中部의 重土壤地帶에서는 耕地의 草地에의 轉換과 輕土壤地帶에서는 터널 및 클로우버등 飼料作物을 輪作에 導入한 새로운 農業技術로서의 노오포오크農法(Norfolk system)을 통한 보다 改良된 農業經營이 追求되었다. 低穀價의 時期에 있어서의 耕地의 草地에의 轉換은 유럽諸國에서 一般

(32) E.G. Mingay, *English Landed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1963, pp. 54-5; do., "The Agricultural Depression," pp. 325-7; do., "The Size of Farms in the Eigh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XIV, No. 3, 1962, pp. 483-4 參照.

의으로 볼 수 있었으며⁽³³⁾ 英國에서도 叙上한 바와 같이 미드랜드와 같은 重土壤地帶에서 그러한 現象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英國의 輕土壤地帶에서는 새로운 農業技術을 導入하기 위한 農業投資가 이루어지고 農業技術의 變革이 進展되면서 穀物生産이 增加되었다. 農業者는 生産性向上을 가져올 수 있는 技術革新, 生産費節減 그리고 增産을 통해서 穀價低下라고 하는 狀態에 對應했던 것이다.

그러던 穀物價格의 下落期에 그와 같은 農業投資가 이루어지고 穀物生産이 增加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理由에서였던가. 존스(Jones)는 이 問題와 關聯해서 英國의 特徵적인 農業機構로서의 地主와 借地農과의 關係를 重要視하고 그것이 穀價上昇期와 下落期間의 投資水準의 差를 最少限度로 줄이는 役割을 했다고 指摘하고 있다.⁽³⁴⁾ 好況期 또는 不況期에 따라서 農業投資의 負擔은 地主와 借地農間에서 移動했다. 즉 不況期에는 地主는 借地農을 위해서 地代滯納을 抹消해 준다든가 또는 好況期에 借地農에게 轉嫁했던 地租負擔을 再引受한다든가 適切한 借地農을 維持하기 위해서 그들이 負擔해야 할 資本支出까지도 援助해 주었다. 17世紀末에서 18世紀初에 걸쳐서 英國에서는 大地主의 所領이 擴大되었다. 하미쿠쿠에 의하면 1692年—1715年の 戰時에 土地에 課해진 過重한 地租負擔과 奢侈的 消費支出에 의해서 中小 젠트리(gentry)가 土地를 喪失하고 衰退한 反面에 大地主들은 所有地를 더욱 擴大했다.⁽³⁵⁾ 擴大된 大地主의 所領은 限嗣相續制, 家族繼承的 不動產處分(family settlement), 所領信託(trust) 그리고 抵當設定에 관한 法律의 發達에 의해서 長期에 걸친 所領維持를 可能하게 했다.⁽³⁶⁾ 더구나 大地主들의 所得은 官職이라든가 年金등 農業 以外의 源泉에서 상당한 程度 때로는 折半이나 補充되었다.⁽³⁷⁾ 한편 地代收入이 大地主의 所得의 重要한 源泉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大地主들은 不況期에는 地代를 引下함으로서 借地農을 維持하고 그들의 農業投資水準을 어느程度 높은 水準에서 維持할 수 있게 했다. 18世紀 前半期の 「農業不況」은 土地利用面에서 볼 때 重土壤地帶에서는 耕地의 草地로의 轉換을 그리고 輕土壤地帶에서는 新農法의 普及을 促進시켰으며 農業組織面에서 볼 때 中小農을 衰退시키고 大土地所有 및 資本主義的 大農場經營體制를 強化시켰던 것이다.

(33) Slicher van Bath, *op. cit.*, pp. 213-7.

(34) E.L. Jones, "Agriculture and Economic Growth in England, 1660-1750: Agricultural Change." 本論文은 처음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XV, No. 1, 1965에 發表되었으나 후에 E.L. Jones (ed.), *Agriculture and Economic Growth in England 1650-1815*, London, 1967, pp. 152-71에 收錄되었다. 本稿에서는 後者를 利用했다. *Ibid.*, p. 160 參照.

(35) Habakkuk, "English Landownership" 參照.

(36) 拙稿, 「18世紀 英國의 地主와 農業」 『經濟論叢』 第Ⅱ卷 第2號 1964年 6月 參照.

(37) Mingay, *English Landed Society*, pp. 71-9.

18世紀 後半期の「好況期」에 있어서의 農業變化의 方向은 叙上한 前半期の 그것과는 다른 樣相을 띠고 있었다. 人口增加와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서 農産物에 對한 需要가 크게 增加하고 그 價格도 騰貴했다. 특히 이 時期의 穀物價格의 騰貴는 穀物生産을 크게 刺戟했다. 地代와 地價는 上昇하고 貧土까지 耕作되었다. 耕作地가 擴大되었을 뿐만 아니라 農業生産性을 向上시키기 위해서 新農法이 積極的으로 利用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後述하는 바와 같이 인클로우저가 進展되었다. 共同地라든가 荒蕪地등 未耕作地의 인클로우저는 바로 耕地擴大의 過程이었으며 耕地의 인클로우저는 粗放의인 開放耕地制를 止揚하여 集約的인 新農法의 普及을 促進시키는 過程이었다. 新農法에 의한 農業技術의 變革과 함께 인클로우저에 의한 農業制度의 變革이 이루어짐으로써 英國의 農業革命은 完成되게 되었던 것이다.

2. 農業技術의 變革

英國의 農業革命期에 있어서 技術變革의 基礎는 根菜, 豆類 및 改良牧草를 包含한 飼料作物을 輪作에 導入한 데에 있었다. 飼料作物을 輪作에 導入함으로써 休閑制가 止揚되고 耕地의 보다 集約的 利用이 可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飼料供給의 增大→家畜數의 增加→施肥의 增大→土地肥沃度의 增大→穀物 및 飼料生産性의 增大라고 하는 農業에 있어서의 擴大再生産이 可能하게 되었다. 休閑制(fallow system)에서는 每年 土地의 3分の1 또는 2分の1이 休閑됨으로써 耕地의 集約的 利用이 制約되었을 뿐만 아니라 飼料不足→家畜數의 停滯→施肥不足→土地肥沃度의 限界→低生産性→飼料不足이라고하는 惡循環으로 말미암아 農業은 單純再生産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19世紀 中葉에 들어서 化學肥料가 利用될 때까지⁽³⁸⁾ 穀物生産은 家畜飼育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家畜放牧과 家畜飼育에 따르는 肥料生産이 土地의 地力回復에 決定的으로 重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休閑制는 必要한 肥料를 充分히 調達할 수 없었던 時期에 있어서 地力の 枯渴을 防止하는 消極的인 方法이었다. 따라서 單純再生産의 惡循環을 벗어날 수 없었던 粗放的인 休閑制下에서는 새로운 耕地의 擴大가 없는 限 農業生産의 增加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새로운 飼料作物의 輪作에의 導入은 바로 이와 같은 惡循環을 斷絶하고 土地의 集約的 利用과 農業生産의 增大를 가져올 수 있게 했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開放耕地, 共同地 및 荒蕪地의 인클로우저는 耕地를 擴大시키

(38) 「人工肥料」의 知識과 그의 耕地作物에의 適用이 急速히 普及되게 된 것은 허트포오드(Hertfordshire)州의 로덤스데드(Rothamsted)農場에서 作物 및 肥料의 實驗에 着手한 化學專攻의 라우스(John Bennet Lawes)가 1842년에 過磷酸製法에 관한 特許를 獲得한 때부터였다. C.S. Orwin, *A History of English Farming*, Edinburgh, 1949: 三澤嶽郎譯『イギリス農業發達史』, 東京, 1958年, pp. 76-7 參照.

고 新作物의 導入에 더욱 適合한 條件을 提供함으로써 農業生産擴大의 制度的 條件이 되었지만 이들 飼料作物의 輪作에의 導入은 傳統的 農業技術에 基本的인 變革을 가져온 것이었다. 新農法의 導入은 餘他的 農業技術의 改良과 함께 基本的으로는 工業에서의 技術革新과 같은 것이었다.⁽³⁹⁾

飼料作物의 英國에의 導入은 從來 생각되어온 것보다도 일찍 이루어졌다. 根菜作物인 터닙(turnip)은 1565년에 園藝作物로서 和蘭으로부터 導入되어 17世紀 中葉까지는 노 오포크 및 서포크와 東南잉글랜드의 餘他地域에서 飼料作物으로서 耕地에서 廣範하게 栽培되었다. 西部諸州에서도 터닙은 17世紀末과 18世紀初에 栽培되었고 18世紀 中葉에는 콘월(Cornwall)에서도 栽培되고 있다. 그러나 西部에서는 터닙은 耕地作物으로서 輪作코오스에 導入된 것이 아니라 家畜飼料의 補充으로서 작은 地片에서 栽培되는 程度였다. 클로우버라든가 센포인(sainfoin), 트레포일(trefoil) 그리고 루선(lucerne) 등 豆類作物과 라이그라스(ryegrass), 콕스프우트(cocksfoot) 그리고 메도우 페스큐(meadow fescue) 등 栽培牧草는 放牧用과 乾牧草用으로 利用되었다. 센포인과 클로우버는 17世紀 中葉 또는 末葉까지는 開放耕地地域에서도 廣範하게 栽培되었다. 특히 센포인과 루선은 普通的 天然牧草의 2배나 되는 營養分을 가진 飼料였다. 이와 같은 飼料作物의 導入과 栽培의 擴大가 飼料供給을 增大시켰다. 뿐만 아니라 灌溉牧草地(floated water meadow)의 普及도 飼料供給을 增大시켰다. 河川의 물을 牧草地에 끌어들이어 灌溉함으로써 量的으로나 質적으로 좋은 牧草를 收穫할 수 있었던 灌溉牧草地는 16世紀 末葉과 17世紀를 통해서 잉글랜드 西部와 西部미드랜드에서 普及되었던 것이다.⁽⁴⁰⁾

이와 같은 飼料作物의 導入과 灌溉牧草地를 통한 量과 質面에서 改良된 飼料生産의 增大는 農業生産에서 매우 重要的 革新을 意味했다. 즉 飼料增大는 家畜飼育의 增大와 改善을 可能케 했으며 그것은 에이커當의 施肥量을 增大시킴으로써 土壤의 肥沃度を 높이고 穀物과 飼料生産의 增大를 可能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飼料作物과 牧草의 栽培는 그 自體가 土壤을 改善하는 데에 貢獻했다. 예를 들어 클로우버는 空中의 窒素를 凝結시키는 作用을 함으로써 小麥과 大麥과 같은 地力枯渴的 作物을 栽培한 뒤의 土地의 肥沃度を 回復시켰으며 新穀草式農法下의 牧草地(ley)의 耕作地에의 再轉換도 土壤改良의 方法이었다.

그러나 飼料作物을 導入한 改良農法은 잉글랜드 全域에 急速하게 普及한 것은 아니다.

(39) 존은 新作物導入의 重要性은 「그후 工業에 適用된 어떠한 革新에도 맞먹을 만한 것이었다」라고 指摘하고 있다. John, "The Course of Agricultural Change," p. 130.

(40) Chambers and Mingay, *op. cit.*, p. 56; Jones, "Agriculture and Economic Growth in England," pp. 154-5. 灌溉採草地에 관해서는 拙稿 「16~7世紀 ウィルトシヤにおける 農業의 發展形態」 參照.

그것은 주로 잉글랜드 東部 및 南部諸州에서 比較的 일찍부터 普及되었다. 이 地方은 런던市場 및 大陸市場에 隣接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大農場經營이 發達하여 改良農法の 導入을 指向한 資力있는 地主와 農業者들이 있었다. 또한 이 地方에서는 일찍부터 인클로우저가 이루어져서 改良農法을 採用하는 데에 있어서 制度的 制約要因이 없었다. 그와 함께 이 地方에서 飼料作物이 일찍부터 導入되고 改良農法이 比較的 일찍 普及되게 된 하나의 重要的 原因은 이 地方的 土壤이 砂質로서 그에 適合했다는 것이다. 輕土壤은 根菜作物의 栽培에 適合하여 耕作이 容易하고 馬力中耕機라든가 二重犁와 같은 勞動節約的 機具의 利用이 可能하고 單位當勞動費는 粘土地帶보다 적었다. 이에 對해서 미드랜드의 粘土質의 重土壤地帶는 根菜作物의 栽培에 不適合했으며 그곳에서는 19世紀 中葉에 安價한 暗渠排水法(under-drainage)이 導入될 때까지는⁽⁴¹⁾ 인클로우저가 이루어져도 休閑制의 原理가 殘存했다. 이와 같은 條件에서 小麥—터닙—大麥—클로우버의 四輪作을 基本으로 하는 새로운 農法으로서의 노오포크農法(Norfolk system)은 17世紀 末葉에 이이스트앵글리아와 南部잉글랜드에서 確立되었던 것이다.

從來 새로운 農業技術의 確立에는 털(Tethro Tull), 타운젠드(Townshend) 및 쿡(Thomas Coke) 등 少數의 改良地主的 先驅的 役割이 強調되어 왔다. 그러나 그후의 實證的 研究의 結果 그들의 役割은 新農業技術의 創始者로서라기보다도 오히려 그의 普及者로서 큰 것이었다고 指摘되고 있다. 예를 들어 科學的 農法の 展開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先驅者의 한 사람이며 「最大의 個人改良家」⁽⁴²⁾로 분더진 털은 小麥과 터닙의 條播와 條播된 作物사이의 中耕을 強調하여 1701년에는 條播機를, 그리고 1714년에는 馬力中耕機(horse hoe)를 各各 發明함으로써 條播의 機械化와 除草를 위한 中耕의 機械化를 實現했다. 털農法の 意義는 條播와 中耕을 結合한 데에 있으나 그와 같은 아이디어는 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⁴³⁾ 한편 타운젠드는 노오포크 農法の 普及에 있어서 重要的 役割

(41) 暗渠排水法の 原理는 1823년에 퍼드州(Perthshire) 더인스톤(Deanston)의 스미드(James Smith)에 의해서 急速히 發展했으며 그 뒤를 이어 받은 것이 파야크스(Josiah Parkes)였다. 19世紀 前半期를 통해서 排水技術者가 直面한 問題는 適切な 溝의 充填材料를 發見한다는 것이었다. 灌木은 耐久性이 缺乏되고 石材는 高價였으며 타일(tile)은 耐久性도 있고 能率도 높았으나 역시 高價였다. 安價한 暗渠排水가 可能해진 것은 1843년에 리이드(John Reade)가 最初의 圓筒形粘土製파이프를 發明하고 그것이 急速히 普及되면서였다. Orwin, *A History of English Farming*, 日譯 pp. 79-80. 오오윈은 土地排水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農業改良과 食糧生産의 增加에 대해서 能率의인 土地排水만큼 間接的으로 貢獻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農民에게 물에 잠긴 土壤대신에 乾燥한 土壤을 줌으로써 耕作費를 減少시켰다. 그것은 作物의 早期播種을 促進하고 또한 秋季節을 延長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以前世代에서의 물에 잠긴 耕地에서는 그 大部分이 잃게 되기 쉽던 堆肥와 人造肥料의 効力을 增大시켰다.」 日譯, p.81.

(42) Lord Ernle, *op. cit.*, p. 169.

(43) Chambers and Mingay, *op. cit.*, p. 60.

을 했다. 그는 1730년에 政界에서 隱退하여 노오포크에 있는 레이남所領(Raynham)에서 農業改良을 追求했다. 그는 주로 「갈풀이 돋은 沼澤地와 少數의 羊이 굶주리고 두마리의 토끼가 풀잎을 놓고 다투는 砂質의 荒蕪地」⁽⁴⁴⁾로 構成된 그의 所領을 泥灰土(marl)을 입혀서 耕地로 轉換하고 노오포크式 四輪作農法을 導入함으로써 休閑制를 없애고 疋農法에 따라서 터어닐을 條播하고 作物사이를 中耕했다. 특히 그는 農業改良의 樞軸으로서 터어닐의 導入을 重要視했다. 그는 또한 荒蕪地를 圍牆하고 小農 地를 大農場으로 統合하여 借地農에게 長期賃貸를 했다. 이와 같은 그의 改良은 크게 成功하여 「가시금작화가 덮인 토끼의 群棲地는 數年사이에 잘 耕作된 生産的인 土地로 轉換되었다.」⁽⁴⁵⁾

그러나 채임버즈와 밉게이는 앞으로 研究가 進展되면 타운젠트는 쿡크와 같이 現存하는 農法을 開發했음에 不過하고 또한 그는 그의 所領을 變形시켰다기보다도 改良했다는 方向에서 評價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⁴⁶⁾ 타운젠트의 農法에 따라서 두드러진 成果를 올린 것은 쿡크(Thomas William Coke, Earl of Leicester 1752—1842)였다. 그는 1776년에 노오포크의 호오감(Holkham) 所領 43,000에이커를 相續받았으나 當時 그 所領은 不毛地狀態에 있었으며 地代收入은 年 2,200파운드에 不過했다. 그는 노오포크農法의 基本特徵인 大農場, 長期賃貸, 四輪作, 泥灰土撒布 등을 통해서 호오감所領의 年地代를 1816년에는 2萬파운드까지 올렸다고 主張되어 왔다.⁽⁴⁷⁾ 그러나 파아커의 最近의 研究에 의하면 호오감所領의 地代는 1776年—1816년에 10倍나 上昇한 것이 아니라 約 2倍 上昇했음에 不過하며 18世紀 末葉에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어온 所領經營의 큰 變化는 일찍부터 일어나고 있었으며 쿡크가 試圖한 土地賃貸條件이라든가 大規模農業投資도 그에 先行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農業革命」은 革命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進化的인 漸進的인 過程이었던 것이다.⁽⁴⁸⁾

新農法은 少數의 改良地主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18世紀의 農業經營條件下에서 輕土壤地帶에서 無數한 地主 및 農業者에 의해서 追求되었다. 특히 18世紀는 밑에서는 中小地主에서부터 위로는 國王에 이르기까지 農業改良의 氣運이 높은 時期였다.⁽⁴⁹⁾ 敍上한 疋, 타운

(44) Lord Ernle, *op. cit.*, p. 174.

(45) *Ibid.*, p. 175.

(46) Chambers and Mingay, *op. cit.*, pp. 60-1.

(47) Lord Ernle, p. 217.

(48) R.A.C. Parker, "Coke of Norfolk and the Agrarian Revolution," 이 論文은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VIII, No. 2, 1955에 發表되었으며 후에 E.M. Carus-Wilson (ed.), *Essays of Economic History*에 收錄되었다. 本稿에서는 後者가 利用되었다. *Essays*, pp. 338-9.

(49) 조지3世(George III 在位 1760—1820年)는 윈저(Windsor) 所領에 모델農場을 만들고 메리노(merino) 羊群의 飼育과 家畜繁殖의 實驗을 했으며 「農業者 조지」(Farmer George) 라는 稱號를 좋아했다. Lord Ernle, *op. cit.*, p. 207 參照.

제트 및 쿡크 등 地主들은 新農法을 積極的으로 導入하고 經營的으로 成功하여 餘他地主 및 農業者들의 農業改良意欲을 刺戟함으로써 新農法의 普及에서 큰 役割을 했던 것이다.

또한 新農法의 普及에 助長한 것은 活潑한 農書의 刊行이었다. 18世紀에는 多數의 農業者에 의해서 農書와 잉글랜드 各地 및 佛蘭西 等地的 農業慣行에 관한 著書들이 多數 出版되었으며 이들 農書들이 新農法의 內容이라든가 利點을 널리 알려 주었다. 18世紀初頭에 農業關係 著者로서 重要的 것으로는 털을 비롯해서 엘리스(William Ellis), 로렌스(John and Edward Laurence), 라일(Edward Lisle) 등이 있었지만 특히 1760年以後에는 마샬(William Marshall), 데이비스(Thomas Davis), 켄트(Nathaniel Kent), 그리고 영(Arthur Young)등에 의해서 各地方의 農業慣行에 관한 報告書라든가 農書가 多數 刊行되었고 그들 農業關係著書가 農業者들 사이에서 廣範하게 읽혀졌다. 그 중에서도 著作活動을 통해서 新農法의 普及에 큰 役割을 한 사람은 영이었다. 그는 英國各地는 물론 아일랜드와 佛蘭西의 農業慣行을 視察하고 視察旅行記를 비롯한 多數의 農業關係著書와 全45卷에 達하는 「農業紀要」(Annals of Agriculture)에의 寄稿를 통해서 새로운 農法의 普及에 盡力했다. 1793년에는 新設된 農業調査局(Board of Agriculture)의 事務局長으로 活躍한 그는 大農場擁護論者로서 노오포크農法을 實施하기 위해서는 인클로우저에 의한 大農場이 創設되어야 한다고 主張했으며 借地農의 農業投資의 條件으로서 土地의 長期賃貸의 重要性을 強調했다.⁽⁵⁰⁾

叙上한 過程에서 普及된 노오포크農法은 飼料供給을 增加시키고 飼育家畜數를 크게 増大시킴으로써 結果的으로 穀物生産을 増大시켰지만 18世紀에는 家畜이 數的으로 增加했음을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改善되었다. 18世紀 中葉에 이르기까지 羊은 羊毛生産과 放牧을 통한 施肥, 그리고 牛는 牛乳生産과 牽引用으로 飼育되어 왔으며 食肉用으로서의 重要性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8世紀 後半期에는 都市의 成長에 따라서 牛乳만이 아니라 食肉需要가 크게 增加하고 그에 對應한 牛乳 및 食肉의 供給增加가 要請되었다. 이러한 背景에서 18世紀 後半期에는 家畜의 品種改良이 進展되었다. 家畜 특히 羊과 牛는 地方에 따라서 여러 品種이 있었다. 그리고 科學的인 淘汰繁殖(selective breeding)을 위한 實驗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8世紀에 들어서였다. 有名한 베이크웰(Robert Bakewell)의 家畜 實驗이 시작된 것은 1745年頃이었다. 레스터셔의 로버러(Laughborough) 近郊의 그의 農場 디슈리 그레이지(Dishley Grange)에서 베이크웰은 近親繁殖法(inbreeding)에 의해서 롱혼種牛의 品種改良을 試圖했으며 또한 특히 新레스터種(New Leicester)을 開發함으로

(50) 영의 活動에 關해서는 Lord Ernle, *op. cit.*, Chapter IX 參照.

씨 보다 良質의 羊毛生産과 羊肉供給에 革新을 가져왔다. 또한 그의 指導를 받은 다알링턴(Darlington) 近郊의 콜링(Charles Colling)은 같은 方法에 의해서 쇼오트혼(Shorthorn) 種牛를 開發했다. 콜링의 쇼오트혼種牛의 開發에 의해서 18世紀 末葉까지 一般的으로 넓게 普及되었던 롱혼(Longhorn) 種牛는 急速하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家畜의 品種改良은 베이크웰과 콜링에 의해서 偶然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家畜改良家の 改良努力을 前提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크웰 白身이 롱혼種牛의 改良을 試圖했지만 그에 앞서서 롱혼種牛의 改良은 버톤 온 트렌트(Burton-on-Trent) 近郊에 있는 드레이크로우(Drakehow)의 그레스리(Sir Thomas Gresley)와 코벤트리近郊 캔리(Canley)의 웨브스터(Webster)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롱혼種牛의 改良에서는 그와 同時代人인 롤라이트(Rollright)의 포울러(Robert Fowler)가 보다 成功했다. 또한 改良된 레스터種羊의 基礎는 알롬(Joseph Allom)이라는 人物에 의해서 놓여지고 있었다. 콜링의 쇼오트혼種牛의 改良은 이와 같은 先行한 많은 實驗을 前提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⁵¹⁾

從來 런던의 家畜市場 스미드필드(Smithfield)에서 販賣된 羊과 牛의 平均重量은 2~3배나 增大했으며, 그와 같은 家畜重量의 增大에 있어서는 品種改良이 一定한 役割을 했다고 생각되어 왔다.⁽⁵²⁾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主張은 批判되어 18世紀에 있어서의 改良家畜群의 普及는 限定된 것이었으며 家畜重量의 增大는 오히려 飼料供給增大의 結果였다고 主張되고 있다.⁽⁵³⁾ 豆類作物 및 根菜作物의 輪作에의 導入에 의한 營養價가 높은 飼料供給의 增大는 飼育家畜數의 增加만이 아니라 그의 重量도 增大시켰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와 함께 品種改良이 食肉供給을 增大시켰다는 것도 事實이다.⁽⁵⁴⁾ 그리고 改良家畜群은 19世紀에 들어서 크게 普及되었던 것이다.

18世紀에는 農器具의 改良은 매우 漸次的인 過程에서 이루어졌다. 18世紀의 農器具는 木材와 鍊鐵로 製作되었고 一般的으로 粗雜하고 非能率의인 것이었다. 産業革命의 進展에 따라서 村落의 個個의 木工 및 鍛冶工에 의해서 木材 및 鍊鐵로 製作된 農器具는 鑄鐵로 製作된 標準的인 工場製品에 의해서 代替되게 되었다. 鐵製犁가 木材犁에 廣範히 代替하게 된 것은 18世紀末이며 이 時期까지에는 改良犁로서의 로더햄犁(Rotherham plough)가 잉글랜드 北部 및 東部에서 好評을 받고 있었다. 1780年代에

(51) 家畜의 品種改良에 관해서는 Chambers and Mingay, *op. cit.*, pp. 66-9; Lord Ernle, *op. cit.*, pp. 184-5; Orwin, *A History of English Farming*, 日譯, pp. 66-74 參照.

(52) Lord Ernle, *op. cit.*, p. 188.

(53) Ashton, *op. cit.*, pp. 51-2.

(54) *Ibid.*, p. 52.

랜섬(Robert Ransome)은 堅固한 鑄鐵製의 白鍊磨犁刀를 導入하여 犁의 能率을 높였으며 1808년에는 쉽게 交換할 수 있는 標準의 部品을 가진 犁가 利用되게 되었다. 1810년까지에는 랜섬工場은 地方市場의 必要에 適合한 86個種의 犁를 製作하고 있었다. 한편 덜의 考案에서 開發된 條播機와 馬力中耕機는 19世紀初에 商業적으로 生産되었으나 輕土壤地帶以外에서는 利用되지 않았고 그곳에서도 그리 많이 利用되지는 않았다. 큰 낫(scythe)이라든가 작은 낫(hook, sickle)으로 하는 收穫作業은 많은 勞動力이 必要한 重勞動이었지만 그의 機械化는 19世紀初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 1812년의 COMMON(John Common)의 考案은 美國의 有名한 맥코믹收穫機(McCormick reaper)의 基礎가 되었고 맥코믹收穫機는 1851년의 런던萬國博覽會에 出品됨으로써 큰 人氣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1826년에 벨(Patrick Bell)에 의해서 發明된 收穫機도 1853년에 비벌리收穫機(Beverley Reaper)로서 改良되어 充分한 評價를 받게 되었다. 한편 마이클(Andrew Meikle)의 脫穀機는 1786년에 出現한 後부터 人氣를 獲得하고 그후 改良되면서 廣範히 利用되었다. 그것은 冬期の 勞働者의 일을 省함으로써 1830년의 잉글랜드南部의 大穀作地帶에서의 暴動의 한 原因이 되었다. 또한 19世紀 中葉에는 飼料粉碎機(feed-mill), 草切機 및 藁切機(hay and chaff-cutter), 根菜切斷機 및 粉碎機(root-slicer and crusher)등도 나타났으며 그것은 처음에는 手動으로 利用되었으나 얼마 안 있어 大農場에서는 蒸氣力이 利用되었다.⁽⁵⁵⁾

農業機械化에의 움직임은 18世紀 末葉以後 나타나고 있었으나 그것이 一般적으로 普及되는 것은 19世紀 中葉에 들어서였다. 따라서 技術的 側面에서 본 英國의 農業革命은 18世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노오포크農法의 成立과 그의 展開를 基軸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土地의 보다 集約的인 利用을 可能케 하고 土地의 生産性を 높였다. 集約的 土地利用은 土地制度의 變革에 의해서도 追求되었다. 그 方法이 인클로우저였던 것이다.

3. 土地制度의 變革

英國農業革命의 制度的 側面은 인클로우저에 의한 土地制度의 近代的 變革이었다. 무엇보다도 인클로우저에 의해서 開放耕地制가 止揚됨으로써 土地는 共同體의 規制로부터 完全히 벗어나 所有者의 意思에 따라 가장 有利하게 能率적으로 利用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農業技術의 導入을 더욱 容易하게 함으로써 農業生産性を 올릴 수 있는 制度的 條件이 되었다. 또한 인클로우저는 共同地와 荒蕪地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그곳에서 行使되고 있던 共同權을 排除하고 그것을 耕地化함으로써 農業生産의 增大를 結果했

(55) 農器具의 改良에 關係서는 Chambers and Mingay, *op. cit.*, pp. 69-72 및 Orwin의 日譯 pp. 81-4 參照.

다. 마지막으로 인클로우저는 土地所有關係의 再編成을 통해서 農村의 構造的 變化를 結果했다. 英國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大農場經營의 體制는 인클로우저의 過程을 거쳐서 確立되었던 것이다. 인클로우저는 18世紀의 大部分과 19世紀初에 걸쳐서 遂行되었지만 그 中에서도 특히 18世紀 後半期과 19世紀初에 集中的으로 이루어졌다. 이 時期의 인클로우저는 耕作地의 보다 能率的인 利用과 耕地擴大를 目的으로 議會가 制定한 法律에 依據해서 合法的으로 遂行되었다는 意味에서 耕地의 牧場에의 轉換을 目的으로 不法的으로 遂行된 16世紀의 그것과는 性格이 다른 것이었다. 물론 英國의 인클로우저는 이들 두 時期에 限해서 斷續的으로 遂行된 것이 아니라 그 速度와 內容에 差異는 있으면서도 中世以來 繼續된 過程이었으며 그 結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18世紀初에는 英格蘭의 耕地의 折半은 圍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18世紀初에 인클로우저의 對象으로서 開放耕地와 共同地가 廣範하게 殘存하고 있었던 地域은 미드랜드 地方과 英格蘭 中南部의 諸州였다. 따라서 인클로우저에 關해서 많은 論爭과 事情이 提起된 地域은 이 地域이었다. 東部에서는 켄트, 서리(Surrey), 서섹스, 허트포드셔, 에섹스, 및 서포크(Suffolk)의 諸州에서 開放耕地가 없었으며 南部에서는 햄프셔(Hampshire)와 도세트의 2州에서 開放耕地가 없었다. 한편 開放耕地와는 달리 共同地와 荒蕪地만의 인클로우저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진 地域은 英格蘭 및 웨일즈의 北部諸州, 요오크셔, 더버셔(Derbyshire), 런컨셔 및 노오포오크의 諸州와 西部미드랜드 및 썸머세트(Somerset)州의 一部였으며 餘他地域에는 인클로우저가 이루어진만한 넓은 共同地와 荒蕪地가 없었다.⁽⁵⁶⁾

18世紀와 19世紀初의 인클로우저는 主로 議會에서 制定된 法律에 依據해서 遂行된 議會인클로우저(parliamentary enclosure)였다. 물론 法律에 依據하지 않은 協定에 의한 인클로우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8世紀 前半期에는 인클로우저는 主로 關聯된 土地所有者間의 協定에 의해서 遂行되었다. 인클로우저 協定은 關聯된 土地所有者의 同意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편 一部の 土地所有者가 다른 土地所有者의 壓力에 의해서 그 協定에 同意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렇듯 協定에 의한 인클로우저는 關聯된 土地所有者間의 利害關係의 相衝이 있기는 했으나 當事者의 意思에 反해서 強制的으로 遂行될 수는 없었으며 또한 急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커다란 社會經濟問題로서 提起되지는 않았다. 協定에 의해서 遂行된 인클로우저의 規模에 關해서는 確實한 것을 말할 수 없으나 大體的으로 法律에 의해서 圍牆된 開放耕地面積의 折半은 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⁵⁷⁾

(56) Chambers and Mingay, *op. cit.*, pp. 77-8.

(57) *Ibid.*, p. 78.

18世紀 後半期에 들어서 인클로우저는 漸次的으로 議會의 法律에 의해서 遂行되게 되었다. 이 時期의 經濟의 條件이 보다 積極的인 인클로우저의 進展을 必要로 하는 속에서 大地主들은 번거로운 協定에 의해서 보다도 그들의 利益을 代辯하는 議會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遂行하는 것이 보다 便利했다. 즉 議會는 關聯된 土地價値의 4分の3 또는 5分の4의 所有者에 의해서 署名된 인클로우저請願書가 提出되면 그에 관한 인클로우저法을 制定하고 地主로 하여금 그것에 依據해서 인클로우저를 遂行할 수 있게 함으로써 地主가 意圖한 인클로우저를 法的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그것은 關聯된 土地의 所有者 全員의 同意가 아니라 보다 많은 價値의 土地를 가진 一部所有者의 意見만으로——그것이 土地價値의 4分の3 또는 5分の4에 達할 경우—— 인클로우저를 遂行할 수 있게 함으로써 大土地所有者에게 有利한 方法이 되었다.⁽⁵⁸⁾ 一定한 土地의 인클로우저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면 인클로우저委員이 任命되고 그들 委員에 의한 該當土地의 測量 評價 및 權利의 審査가 이루어진 후에 인클로우저가 實施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議會의 法律에 依據해서 遂行된 인클로우저는 18世紀 前半期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특히 그의 後半期에 集中的으로 遂行되었다. 議會에서 制定된 인클로우저法은 法에 따라서 適用될 土地價値에 差異가 있었고 또한 인클로우저法이 制定된 時期와 그것이 遂行된 時期와의 사이에는 時差도 있었으므로 制定된 法律數가 반드시 當該年度의 인클로우저의 規模와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大體的인 指標은 될 것이다. 이제 通過된 인클로우저法을 보면 1700年에서 1760年에 이르는 期間에는 年平均 4件程度에 不過했던 것이 1760年에서 1792年에 이르는 期間에는 年平均 40件 以上으로 增加했으며 英佛戰爭期間에는 年平均 80件에 達했다가 그후 減少하고 있다. 특히 인클로우저는 1760年代 및 70年代, 그리고 1793年—1815年의 英佛戰爭期間에 集中的으로 이루어졌다. 通過된 인클로우저法은 前者의 時期에는 900件, 그리고 後者の 時期에는 約 2,000件에 達했다. 1750年에서 1850年에 이르는 100年동안에 約 4,000件의 法律이 通過되었으므로 그의 約 4分の3이 叙上한 兩時期의 39年동안에 通過된 것이다.⁽⁵⁹⁾ 따라서 인클로우저는 이 時期에 集中的으로 遂行된 것이다.

애슈튼은 인클로우저의 進展度를 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서 穀物價格과 함께 利子率의 움직임을 들고 있다. 즉 그는 인클로우저가 活潑하게 遂行된 時期는 大部分이 穀物價格의 上昇에 뒤따랐으며 또한 그것은 利子率이 낮은 時期이기도 했다고 主張하고 1780

(58) J.L. and Barbara Hammond, *The Village Labourer*, Vol. I(Guild Books No. 239), London, 1948 (1st ed., 1911), p. 43.

(59) Chambers and Mingay, p. 77, Ashton, *op. cit.*, p. 40.

年代에는 利率의 上昇이 인클로우저費用을 크게 함으로써 그의 進展을 制約했다고 指摘하고 있다.⁽⁶⁰⁾ 한편 재임버즈 및 밉게이는 活潑한 인클로우저의 原因으로서 總利率보다도 高穀物價格을 重要視하고 특히 英佛戰爭期에는 年度에 따라서는 利率도 높았지만 인클로우저가 集中的으로 이루어진 것은 穀物價格이 높았기 때문이었다고 指摘하고 있다.⁽⁶¹⁾ 어떻던 인클로우저를 遂行하는 데에 있어서 主導的 役割을 한 大地主의 主된 關心은 地代收入을 增大시키는 데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인클로우저費用과 그 結果로서의 上昇된 地代와의 差額이 큰 限에 있어서 인클로우저를 推進했던 것이다. 인클로우저後의 地代는 地方에 따라서 差異가 있으나 平均해서 인클로우저 以前의 그것의 2 배였으며 地主의 投賣에 對한 收益은 15~20%였다고 推定되고 있다.⁽⁶²⁾ 그것은 公債와 土地購入에의 投資에 對한 收益이 5~6%였다는 事實과 比較할 때 훨씬 有利한 것이었다. 높은 收益을 가져오는 投資의 方法으로서 인클로우저가 進展된 것이다.

인클로우저는 地主에게 높은 地代收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農業者에게는 높은 農業利潤을 保障했다. 農產物價格이 騰貴하는 속에서 인클로우저는 合理的 土地利用을 통해서 農業生産性を 높일 뿐 아니라 耕地擴大를 통해서 農業生産을 擴大시킴으로써 農業者의 利潤을 크게 해주었다. 地代上昇은 農業利潤의 增大를 前提로 해서 實現된 것이었다. 또한 인클로우저는 增加하는 人口를 扶養하는 데에 必要한 食糧供給能力을 크게 增大시켰다는 意味에서 國民經濟的 觀點에서도 重要的 것이었다.

인클로우저는 叙上한 經濟的 効果와 함께 重大한 社會的 結果를 隨伴했다. 인클로우저는 土地制度의 再編成過程이었던 만큼 그 속에서 土地所有關係와 農村構造의 變化가 進展되었다. 무엇보다도 인클로우저의 過程에서 大土地所有制와 資本家的 大農場制의 展開가 더욱 促進되었다. 大土地所有制와 大農場制는 이미 18世紀 前半期에 크게 展開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議會인클로우저의 過程을 거쳐서 19世紀初에는 最終的인 確立을 보았다. 인클로우저를 위한 土地의 交換, 統合, 大規模의 農業投資, 그리고 改良農法을 導入한 보다 能率적이고 集約的인 農業經營은 모두가 大土地所有制와 大農場制의 展開에 有利하게 作用했다. 인클로우저 推進의 主役은 바로 大地主와 農業者였으며 그 利益은 주로 그들에게 歸屬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인클로우저는 小農에게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가. 이 問題에 관해서는 從來 요오먼(yeoman)層의 衰滅時期와 關聯해서 많은 論議가 이루어져 왔다. 토인비(A. Toynbee)

(60) Ashton, *Ibid.*, p. 41.

(61) Chambers and Mingay, pp. 83-4.

(62) *Ibid.*, pp. 84-5.

는 獨立自營農民으로서의 요오맨層의 衰退要因으로서 經濟的 要因보다도 政治的 權力이
 라든가 社會的 威信的 基礎으로서의 強烈的 土地獲得慾과 大商人과의 婚姻關係에 의한 大
 地主階級の 強力한 土地獲得力이라고 하는 政治的 및 社會的 要因을 重要視하고 있지만
 특히 18世紀 後半期에 있어서는 共同耕地와 共同地 및 荒蕪地의 인클로우저 및 農場의 統
 합이 요오맨의 數的 減少, 그들의 프로데타리아트에의 轉化와 貧窮增大의 原因이었다고
 主張했다. (63) 레비(H. Levy) (64)도 요오맨層의 衰滅期를 1760年—1815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原因을 인클로우저보다도 穀物價格의 騰貴라고 하는 經濟的 側面에서 曄
 고 있으며 그 過程을 그들의 農業者=“地農에의 上昇 轉化로 把握하고 있다. 한편 하스
 바하(W. Hasbach) (65)는 인클로우저의 影響을 重視하면서도 토인비와 레비와는 달리 요
 오맨層 衰滅의 時期로서 1815年 以後를 重要視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諸說은 17世紀末
 葉—18世紀中葉을 요오맨層 衰滅의 決定的 時期로 보는 존슨(A. Johnson) (66)에 의해서
 批判되고 존슨說은 그레이(H. L. Gray) (67), 데이비스(E. Davies) (68) 및 라브로브스키
 (V.M. Lavrovsky) (69) 등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그것이 오늘날 通說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요오맨層의 衰滅의 決定的 時期가 17世紀末葉—18世紀中葉이었다고 하는 通說은
 이 時期에 英國農村에서 特徵的인 階層이었던 獨立自營農民으로서의 요오맨層이 衰滅했
 다는 것이지 個別農民으로서 그들이 消滅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叙上한 바와
 같이 戰時課稅, 奢侈的 支出, 그리고 低穀價라고 하는 18世紀 前半期의 社會經濟的 條件속
 에서 階層으로서 中小地主層 즉 젠트리와 小農層이 衰退하고 大地主의 所有地가 더욱
 擴大되었다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小農이 消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요오
 맨이 하나의 階層으로서 18世紀 前半期에 이미 그 重要性을 喪失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도 小農은 多數 存在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인클로우저에 의해서 상당한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63) A. Toynbee,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ngland*, London, 1884.

(64) H. Levy, *Large and Small Holdings*, 1911.

(65) W. Hasbach, *A History of English Agricultural Labourer*, London, 1908.

(66) A. Johnson, *The Disappearance of the Small Landowner*, Oxford, 1909.

(67) H.L. Gray, "Yeoman Farming in Oxfordshire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Nineteen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XXIV, 1910.

(68) E. Davies, "The Small Landowner, 1780—1832, in the Light of the Land Tax Assessments," *Economic History Review*, Vol. I, No. 1, 1927. 이 論文은 E.M. Carus-Wilson(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London, 1954에 收錄되고 있다.

(69) V.M. Lavrovsky, "Parliamentary Enclosures in the County of Suffolk, 1797—1814," *Economic History Review*, Vol. VII, No. 2, 1937.

토인비의 主張을 받아서 인클로우저가 自作農으로서의 小農과 貧農(cottager 및 squatter)에게 決定的인 打擊을 주었다고 主張한 것은 해먼드夫婦(J.L. and Barbara Hammond)였다. 그들은 인클로우저請願書를 위한「同意」가 小農에게는 상당히 크게 強要된 것이었으며 또한 인클로우저委員會 階級的 偏見에서 大地主에 有利하게 作用했으며 또한 인클로우저費用도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小農에게 매우 不利한 것이었다고 主張했다.⁽⁷⁰⁾ 해먼드 夫婦는: 「인클로우저는 小農 코테이저(cottager) 및 스쿼터(squatter)의 3階級에 破滅의 인 것이었다. 이들 階級全體에 對해서 그들의 共同權은 그 대신에 그들이 受取한 어느 것보다도 價値있는 것이었다」⁽⁷¹⁾고 指摘하고 그들의 地位는 大地主리든가 大農業者의 그것과는 正反對로 매우 不利했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小農은 共同耕地의 分割에서 公正한 몫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클로우저法의 制定過程에서 負擔해야 했던 法的 費用과 實際의 圍牆費用이 커서 自身의 土地를 賣渡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萬若에 그 費用을 負擔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共同權으로부터 排除됨으로써 結局 沒落의 길을 걷고 美國으로 移民을 가든가, 工業都市로 移住하든가, 또는 日雇勞動者가 되었다. 다음에 코테이저는 아무런 補償없이 共同權이 排除되고 또한 若干의 割當地를 받았으나 그것은 別로 價値가 없는 것이었고 結局 그것도 喪失함으로써 「土地를 가진 勞動者」였던 그들은 인클로우저 以後에는 「土地없는 勞動者」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本來의 村落經濟 밖에서 즉 荒蕪地에 定着하여 蠶食地를 耕作하는 스쿼터는 定着年數에 따라서 그것을 保有할 수 있었으나 共同權은 喪失했다.⁽⁷²⁾ 해먼드 夫婦의 이와 같은 主張은 根本적으로는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한 그들의 悲觀論에 통하는 것이다.⁽⁷³⁾ 인클로우저의 社會的 結果와 關聯해서 돕(Maurice Dobb)은 産業革命期에 必要한 工業勞動力은 人口의 自然增에 의해서도 增加했지만 그보다도 重要的 事物으로서 「制度的 創造物」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形成을 들고 있다. 즉 인클로우저에 의한 土地로부터의 強制的 追放, 農村家內工業의 衰退에 따르는 副業消滅, 그리고 大農과의 競爭에서의 敗退 등 諸要因에 의해서 小農이 衰退하고 勞動者가 됨으로써 「勞動豫備軍」을 形成했다는 것이다.⁽⁷⁴⁾

이와 같은 主張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反論이 提起되었다. 고너(E. C. K. Gonner)는 1912년에 이미 議會인클로우저의 實施에 있어서 인클로우저委員會 階級的 偏見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公正하게 그 任務를 遂行했다고 主張하고 있으며⁽⁷⁵⁾ 테이트(W. E. Tate)는 인클

(70) J.L. and Barbara Hammond, *op. cit.*, Chapter II 參照.

(71) *Ibid.*, p. 93.

(72) *Ibid.*, pp. 93-9.

(73) 拙稿「産業革命과 勞動者의 生活水準」『經濟論集』第10卷 第1號, 1971年 3月

(74)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London, 1946, pp. 223-8 參照.

(75) E.C.K. Gonner, *Common Land and Inclosure*, London, 2nd ed., 1965 (1st ed., 1912), cited in Chambers and Mingay, *op. cit.*, p. 86.

로우저委員의 公正性에 關係해서 公녀의 主張에 贊成하면서 인클로우저請願書를 위한 同意도 強要된 것이 아니라 自意的인 것이었다고 指摘하고 있다.⁽⁷⁶⁾ 또한 데이비스(E. Davies)는 地租査定簿(Land Tax Assessments)의 綿密한 分析의 結果로서 1780年—1815年에 自作農은 數的으로 增加했으며 當時의 經濟的 條件은 그들에게 有利한 것이었다고 主張하고 있다.⁽⁷⁷⁾ 그리고 最近의 實證的인 研究의 諸成果는 다음과 같은 點들을 強調하고 있다. 즉 첫째로 인클로우저過程에서 小農은 共同耕地에서의 그들의 所有權이 充分히 補償됨으로써 土地로부터 追放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數的으로 增加했고 또한 그들의 土地도 增大했다는 것, 둘째로 인클로우저費用도 小農들에게 큰 負擔이 되지는 않았고 穀價가 騰貴하는 속에서 그들의 經濟的 條件은 有利했다는 것, 셋째로 그들은 1815年 以後의 穀價 下落이라고 하는 經濟的 困難에 直面해서 消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코테이저라든가 스쿼터 등 共同耕地에 權利를 가지고 있지 않은 貧農들은 인클로우저 以外에도 實質的으로 共同權을 喪失하고 있었으며 共同權을 가지고 있는 貧農들에게는 반드시 土地가 分與되었다는 것, 그리고 分與된 土地는 一般的으로 3 에이커 程度의 小地片이었고 또한 偏僻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賣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경우 그들은 農業 勞動者가 되거나, 救貧對象이 되거나, 또는 都市勞動者가 될 수 밖에 없었지만 新農法과 인클로우저의 進展은 農村에서의 雇傭機會를 擴大시킴으로써 그들은 農村에서 追放된 것이 아니라 大體的으로 農村에 殘存했다는 것이다.⁽⁷⁸⁾ 이와 같은 論據에서 産業革命期에 增大한 都市勞動者는 農村으로부터 制度的으로 創出된 것이 아니라 人口의 「自然增加」에 의해서 供給되었다고 主張되고 있는 것이다.⁽⁷⁹⁾

이렇듯 最近의 實證的 研究成果는 議會인클로우저가 小農을 沒落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數的으로 增加시켰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事實 인클로우저는 小農의 沒落을 前提로 해서 展開된 것이며 따라서 農村構造의 變化는 議會인클로우저에 의해서 비로소 急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8世紀 前半期에 이미 크게 進展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最近의 實證的 研究가 一般的으로 主張하고 있는 바와 같이 議會인클로우저는 單純히 그 以前에 進展되고 있었던 農業變化를 促進시켰을 뿐이고 그 自體로서의 社會經濟的 意義는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最近의 實證的 研究의 成果를 充分히 勘案하고 農業上의 諸

(76) W.E. Tate, "Opposition to Parliamentary Enclosure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Agricultural History*, XIX, 1948, cited in Chambers and Mingay, *Ibid.*, p. 87.

(77) E. Davies, "The Small Landowner," Carus-Wilson(ed.), *op. cit.*, pp. 292-3.

(78) Ashton, *op. cit.*, pp. 46-7; Chambers and Mingay, *op. cit.*, pp. 88-99 參照.

(79) J.D. Chambers, "Enclosure and Labour Supply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V, 1953(이 論文은 E.L. Jones(ed.), *Agriculture and Economic Growth in England 1650—1815*, London, 1967에 收錄되고 있다) 參照.

變化的 漸進의 性格을 強調하면서도 議會인클로우저가 가지는 社會經濟的 意義를 看過해서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클로우저는 近代의 土地所有權을 最終的으로 確立시키고 그 過程에서 農民分化를 促進하고 農村프로레타리아트를 創出했다. 인클로우저 過程에서 小農이 數的으로 增加하고 그의 土地가 擴大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農業好況과 耕地擴大라고 하는 一般의 背景에서 나타난 現象이며 인클로우저 以後에 그와 같은 經濟的好條件이 消滅하면 그들은 直刻的으로 衰退할 運命에 있었다. 1815年 以後에 小農이 急激히 消滅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事情을 反證하는 것이다. 즉 小農은 인클로우저에 의해서 共同體的 基盤에서 完全히 벗어나 專業的인 農民이 되었으며 그들은 家內工業과의 關聯도 斷絶됨으로써 그들의 運命은 純粹히 農產物價格條件에 의해서 決定되게 되었다. 따라서 인클로우저 過程에서 小農이 數的으로 增加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殘存케 하고 存續시킨 것은 當時의 農業好況이었으며 인클로우저는 小農을 完全한 競爭的 基礎위에 놓음으로써 結局에는 그 沒落을 決定的인 것으로 했던 것이다. 또한 인클로우저는 共同地를 分割 圍牆하고 그곳에 미치고 있던 共同權을 排除함으로써 若干의 地片과 共同權을 가지고 農業勞動을 통해서 生計를 維持하고 있던 코티어저라든가 스쿼터 등 貧農을 結局에는 沒落하는 小農과 함께 完全히 農村프로레타리아트화시켰다. 그들은 우선 雇傭機會가 擴大하고 있던 農業에 勞動者로서 雇傭되었지만 그와 같은 條件이 相對的으로 減少하면 完全한 工業勞動者로서 轉化될 수 있게 되었다. 인클로우저는 共同體的 基盤을 最終的으로 崩壞시킴으로써 結局 沒落하게 될 小農과 貧農을 完全히 프로레타리아트화 시키고 그의 可動性(mobility)을 增大시켰다. 그 結果 資本家의 大農經營體制로서의 地主—借地農體制은 確立되었다. 체임버즈가 主張하는 바와 같이 議會인클로우저가 產業革命에 必要한 工業勞動者를 供給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人口의 自然增加와 함께 必要로 하면 언제든지 供給할 수 있는 勞動力을 農村에서 創出했던 것이다.

애슈톤은 인클로우저의 經濟的 意義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인클로우저는 農業 및 農地上的 變化的 한 側面에 不過했다. 大所領과 大農場의 成長, 土地所有權의 變化, 資本使用의 增大, 技術革新 그리고 特定作物에의 地方的 特化의 增大는 인클로우저 없이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萬一 人口增加가 獨立의이었다고 한다면——그리고 그 自體가 이들 諸變化에 의해서 誘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인클로우저없이 生活水準이 維持될 수 있었다고 믿기는 困難하다. 1795年과 1800年의 食糧不足은 深刻했으며 萬一 土地生産性을 增大하는 인클로우저가 없었더라면 全國的인 破局이 있었을 것이다.」⁽⁸⁰⁾

(80) Ashton, *op. cit.*, p. 48.

인클로우저는 이와 같은 經濟的 意義와 함께 叙上한 바와 같이 重要한 社會的 意義를 가진 것이었다.

IV. 結 語

英國의 農業革命의 過程은 19世紀 前半期들 中에서 繼續되었다. 小農의 經濟的 基盤이 무너지고 그들의 最終的인 消滅과 함께 大土地所有制 및 資本家的 大農業經營體制가 確立되는 것은 1815年 以後의 일이며 또한 資本集約의 高度農業(High Farming)이 展開되어 農業生産性이 크게 上昇하게 되는 것도 19世紀에 들어되었다. 즉 1815年의 英佛戰爭의 終結과 함께 나타난 穀物價格의 下落=農業不況에 直面해서 小農들이 沒落한 한편 資本家的 農業者는 限界地의 耕作을 拋棄하고 肥沃한 土地에서 보다 資本集約的인 農業經營을 했다. 工業化의 進展은 農業의 機械化를 可能케 했다. 또한 培集排水技術의 發達은 重土壤地畠에서의 改良農法의 利用을 可能케 했으며 化學肥料의 利用은 農業生産性의 一層의 上昇을 可能케 했다. 이와 같은 資本集約的인 高度農業에 의해서 「英國農業은 1840年 以後에 銀時代와 그 후에는 黃金時代를 누리게 시작됐다.⁽⁸¹⁾」 1846년에는 穀物法이 最終的으로 廢止되어 穀物의 自由輸入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英國農業은 1870年代에 低廉한 美國穀物의 大量輸入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繼續해서 繁榮했다.

英國의 農業發展에 있어서 農業政策이 어느 程度의 寄與를 했는가를 正確하게 測定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穀物價格을 一定한 水準에 維持한다는 것을 基本的인 目標로 해서 遂行된 것인만큼 그것이 한 役割은 正當하게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英國의 農業政策은 穀物法(Corn Law)을 基盤으로 해서 遂行되었다. 從來 穀物輸出을 規制함으로써 消費者保護의 立場에서 實施되던 穀物法은 王政復古(1660年) 以後의 地主勢力의 增大에 따라서 生産者保護의 立場으로 轉換되고 그후 그것은 이와 같은 立場에서 一貫해서 施行되었다. 즉 그것은 國內의 穀價를 高水準에 維持하기 위해서 輸入穀物에 대한 關稅賦課를 規定했고 또한 1689年의 穀物法은 輸出獎勵金의 支給을 規定하고 있다. 1765年 以後 英國은 穀物輸入國이 됨으로써 輸出獎勵金의 支給을 規定한 1689年의 法律은 死文化되었지만 國內 小賣價格을 一定한 水準에서 維持함으로써 生産者의 利益擁護를 指向한 穀物法은 繼續해서 施行되었다. 그러나 穀物法은 18世紀의 大部分을 통해서 消費者에게 큰 負擔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消費者에게 經濟的 壓迫을 주고 階級間에 利害關係의 對立을 深化시키게 된 것은 1790年代에 들어서 凶作에 의한 英國의 穀物不足이 食糧暴動까지 惹起시키게 됨으로써 비롯되었다. 특히 英佛戰爭期間의 穀物價格의 騰貴는

(81) H. Heaton, *Economic History of Europe*, Revised Edition, 1948, p. 418.

勞動者에게 큰 經濟的 壓迫을 주었다. 工業者도 穀價騰貴는 不利한 것이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인클로우저가 進展되어 農耕地가 擴大되고 農業生産이 增大되고 農業이 繁榮했던 것이다.

그러나 戰時중 騰貴했던 穀價는 終戰과 함께 下落하고 農業繁榮期에 耕地와 農業投資는 크게 擴大한 地土의 農業者는 保護를 要求했다. 議會는 1815년에 穀物法을 改正하여 小麥 1퀴니當 80실링 以下の 경우에는 小麥輸入을 禁止시켰다. 그것은 國內小麥 價格을 1퀴니當 最少限 80실링의 水準을 制度的으로 保障한 것이었다. 穀物法이 規定한 國內最低保障 小麥價格의 水準은 1822년에는 70실링으로 引下調整되고, 1828년에는 슬라이딩 스케일制가 導入되었다. 그것은 小麥價格이 52 또는 53실링 以下の 경우에는 34실링 8펜스의 關稅를 賦課하고 小麥價格이 上되는데 따라서 關稅額을 引下해서 73실링 또는 그 以上の 경우에는 1실링의 關稅를 賦課한다는 것이었다. 穀物法이 保障한 小麥價格의 水準에는 時期에 따라서 差異가 있었으나 그것이 基本的으로 地主 및 農業者의 利益을 擁護하는 立場에서 施行되었다는 點에 있어서는 共通하다. 生産者保護를 指向한 農業政策이 1846년에 穀物法이 最終的으로 撤廢될 때까지 繼續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生産者保護의 立場에서 一貫해서 施行된 穀物法이 地主와 農業者에게 一方的으로 有利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穀物法은 18世紀 前半期の 小麥價格 下落期에는 輸出獎勵金을 支給함으로써 1765年 以後에 英國이 穀物을 輸入하게 되자 輸入穀物에 對한 關稅賦課를 함으로써 地主와 農業者를 保護했다. 그들은 穀物法에 의한 保護下에서 農業改良을 推進하면서 農業生産을 擴大시킬 수 있었다. 英國의 農業革命이 바로 이와 같은 穀物法體制下에서 遂行되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生産者이면서도 販賣를 위한 剩餘를 가지지 못한 小農은 穀物法體制的 惠澤을 받을 수가 없었다. 穀物法 體制는 地主와 農業者의 利益을 擁護함으로써 大土地所有制 및 資本主義的 大農經營制의 確立과 새로운 改良農業의 展開를 結果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制度的인 要因으로서 作用했다. 議會가 任命한 인클로우저委員이 階級的 偏見없이 公正하게 行動했다는 것을 認定한다 할지라도 보다 根本的으로는 穀物法體制가 있었던 만큼 政府의 農業政策은 相對的으로 地主 및 大借地農에게는 有利하게 그리고 小農에게는 不利하게 遂行되었다. 1846년에 穀物法이 最終的으로 撤廢되는 데에 있어서는 成長하는 中産階級에 基盤을 두고 1838년에 結成된 反穀物法同盟(Anti-Corn Law League)을 中心으로 한 消費者의 廣範한 穀物法 撤廢運動이 큰 役割을 했지만 그와 함께 이 時期에 이르기까지 英國農業은 高度農業을 통해서 輸入穀物에 有效하게 競爭할 수 있는 農業生産力을 이미 가지고 있

였다는 것을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리스 디는 穀物法이 産業革命의 初期가 아니라 末期에 撤廢되었다는 것을 重視하면서 穀物法體制下에서 英國은 18世紀 前半期에 小麥輸出 能力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産業革命이 進展되는 18世紀末葉에도 大體的으로 食糧의 自給自足を 할 수 있었으며 産業革命의 完成期인 1840年代에 이르러 비로서 國內 小麥需要의 10~15%를 輸入에 依存하게 되었다고 指摘하고 있다.⁽⁸²⁾

英國의 農業革命은 産業革命에 先行 또는 그와 並行해서 遂行됨으로써 重要な 役割을 했다. 18世紀 前半期の 農業生産性的 增加와 穀物價格의 下落이 農業者의 所得을 減少시켰으며 또한 勞動者의 實質所得의 上昇에도 不拘하고 「진時代」(gin age)라고 불려질만큼 賃에의 消費支出로 말미암아 그들의 經濟的 地位가 크게 改善되지 못했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農業不況」은 全面的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中小農과 新農法을 導入하지 못한 重土壤地帶의 穀物生産者를 困難하게 했지만 輕土壤地帶의 改良農業者와 價格이 安定的이었던 家畜生産物을 生産하는 牧畜業者에게는 만드시 不況은 아니었다. 한편 實質的으로 改善된 勞動者의 收入이 賃에만 모두 支出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工業製品에 對한 購買力도 增大시켰다. 더구나 低農産物價格은 工業者에게는 工業費用을 減少시켰다. 이러한 背景에서 英國의 工業은 18世紀 前半期에 纖維工業을 中心으로 着實한 成長을 했다.⁽⁸³⁾

특히 18世紀 後半期에 産業革命이 進展되는 過程에서 展開된 英國의 農業革命은 重要な 役割을 했다. 첫째로 그것은 增加하는 人口 특히 工業中心地의 非農業人口를 扶養할 수 있게 했다. 1750년에 英國의 穀物輸出은 總輸出의 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8世紀 後半期를 통해서 英國은 食糧의 大體的인 自給自足を 할 수가 있었다. 둘째로 그것은 農業所得을 增大시켰으므로써 英國의 工業製品에 對한 購買力을 增大시키고 工業生産을 刺戟했다. 英國의 工業生産의 擴大를 뒷받침한 것은 擴大하는 그러나 不安定한 外國需要와 함께 安定的인 國內需要의 擴大였다. 셋째로 그것은 地主와 農業者의 地代 및 農業利潤을 增大시켰으므로써 農業에서의 資本蓄積을 促進시키고 그의 工業資本에의 轉換을 可能케 했다. 産業革命期에 鐵工業 鑛業, 및 交通機關 등의 諸部門에는 農業資本이 大量으로 投入되었다. 또한 農業部門은 政府租稅收入의 大部分을 負擔함으로써 商工業部門의 負擔을 輕減 시키고 그의 發展을 促進했다.⁽⁸⁴⁾ 마지막으로 그것은 農業勞動者의 都市勞動者에의

(82) Phyllis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Cambridge, 1965, p. 189. 또한 穀物法에 관해서는 *Ibid.*, pp. 188-196 參照.

(83) A.H. John. "Aspects of English Economic Growth in the First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Economica*, New Series, Vol. XXVIII, No. 110, 1961(이 論文은 E.M.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Vol. II, London, 1962에 收錄되고 있다) 및 拙稿「近代英國農業의 展開와 經濟成長」『經濟論集』第VI卷 第3號, 1967年 9月 參照.

(84) Deane, *op. cit.*, pp. 48-50.

轉換을 可能케 했다. 傳統的 農業關係의 近代的 轉換이라고 하는 技術的 및 制度的 變革에 의해서 遂行된 農業革命은 農業生産力을 크게 上昇케 했다는 意味에서 經濟的 意義가 컸을 뿐만 아니라 前工業社會에서 農村社會의 地位가 壓倒的인 것이었던 만큼 그것은 傳統的 社會關係의 變化의 重要的 前提가 되었다는 意味에서 커다란 社會的 意義를 가지고 있다.